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. 8. 30 선고 2016가단464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8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A, B, C, D, E, F, G, H, I,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 단층 무허가 주택 1동, 단층 무허가 화장실 및 창고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6. 6. 25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윤봉학

별지